

학부모 권리

메릴랜드 주 절차적 보호규약 (Procedural Safeguards)에 대한 공지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교육/조기 개입 서비스 과

7월 1일, 2007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교육과/ 조기 개입 서비스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교육/조기 개입 서비스 과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2

410-767-0858 (전화)

410-333-1571 (팩스)

<http://marylandpublicschools.org>

메릴랜드 주 교육부(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는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출신 국가, 종교, 장애여부를 근거로 고용과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주 교육부 정책에 관한 질문은 평등 보장 및 준법 감시국(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Branch) 전화 (410) 767-0433, 팩스 (410) 767-0431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장애인 보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에 의거하여 이 문서는 요청 시 장애인용 본을 제공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교육/ 조기 개입 서비스 과(Division of Special Education/Early Intervention Service) 전화 (410) 767-0858 혹은 팩스 (410) 333-1571로 연락하십시오.

이 문서는 주 교육부 특수교육/조기 개입과 와 미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 청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지원을 받은 IDEA Part B Grant #HO27A060035A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었습니다. 주 교육부 특수교육/조기 개입과는 미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청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청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없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복사 및 공유를 적극 권장합니다. 복사 및 공유 시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교육/ 조기 개입과 가 출처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절차상 보호 규약.....	1
모국어.....	1
전자우편.....	2
사전 서면 공지.....	2
공지.....	2
서면 공지 내용.....	3
동의.....	3
초기 평가를 위한 학부모 동의.....	3
주 정부 보호 대상자를 위한 특별 규정.....	4
서비스를 위한 학부모 동의.....	4
재평가를 위한 학부모 동의.....	4
학부모 동의를 위한 필요 서류.....	5
기타 동의 요건.....	5
외부 교육 평가.....	6
정의.....	6
공립 교육기관의 검사 기준.....	6
공비용으로 외부 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6
학부모 부담으로 실시되는 외부 평가.....	7
심의회 위원에 의한 평가 요청.....	7
정보의 기밀 유지.....	7
정의.....	7
보호대책.....	8
동의.....	8
기록 열람권.....	9
열람 및 검토 사실에 대한 기록.....	9
학부모의 요청에 의한 기록 수정.....	10
정보 파기 절차.....	10
학생의 권리.....	11
징계 정보.....	11
장애 학생의 징계.....	11
정의.....	11
교직원의 권한.....	12
장애 징후 결정.....	12
학교 배치 변경.....	13
임시 대안 교육 시설.....	13

징계 이의 신청.....	14
장애 여부가 아직 판정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14
법 집행기관과 사법 당국에 의뢰 및 이들 기관의 조치.....	15
학부모가 자녀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경우.....	15
배상 한도.....	16
학생이 성년이 될 시 학부모의 권리 이양.....	17
의견 차이 해결.....	17
조정 절차(Mediation).....	17
조정 절차 권장을 위한 회의.....	18
주 상대 이의와 적법 절차 이의의 차이.....	18
주 상대 이의(State Compliant)	19
주 상대 이의 해결.....	20
적법 절차 심의회에도 제기된 주 상대 이의 신청 해결.....	20
적법 절차 이의(Due Process Complaint)	21
적법 절차 이의서의 구비 요건.....	21
적법 절차 이의에 대한 답변.....	21
충분한 공지.....	22
절차 진행 시 학생의 학교 배정 상태.....	22
문제 해결 과정.....	23
30 일 해결 기간 내 문제 조정.....	23
문제 합의	24
적법 절차 심의회(Due Process Hearing).....	25
행정법 판사	25
적법 절차 이의에 제기 될 수 있는 문제.....	25
심의회 권리.....	25
추가 정보 공개.....	25
학부모 권리.....	26
심의회 판결.....	26
별도의 적법 절차 이의 제기	26
심의회 의 일정과 편리성.....	26
신속 일정.....	27
심의회 판결의 최종 효력.....	27
판결 불복(Appeal).....	27
변호사 비용.....	28
부록.....	30

절차상 보호 규약(Procedural Safeguards)

절차상 보호 규약에 대한 공지는 학부모의 권리에 대한 총체적 설명을 포함함에 있어 해당 학부모의 모국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보호 규약은 2004년 제정된 장애인 교육개선 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미 헌법(20 U.S.C. §1400 et seq.), 메릴랜드 주 법(COMAR 13 A.05.01.01-.16) 과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을 실행근거로 하는 메릴랜드 주 법(COMAR 13 A. 08.03)에 의거하여 수립 되었다. 각 공립 교육기관은 2004년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 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해서 이 절차상 보호 규약을 제정, 실행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 한다. 학부모에게는 일년에 한번 절차상 보호 규약 사본을 우송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학부모에게 별도의 사본을 보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초기 위탁 혹은 부모의 평가 요청 시;
- 미 연방 규제법(34 CFR 300.151 부터 300.153)에 의거하여 학기 중 주 정부 상대로 특수교육에 대해 이의를 처음으로 제기 했을 시;
- 미 연방 규제법(34 CFR § 300.507)에 의거하여 학기 중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의를 처음으로 제기 했을 시;
- 징계 행위 결정이 내려졌을 시; 그리고
- 학부모의 요청 시

각 공립 교육기관은 현행 절차상 보호 규약의 사본을 각 기관의 인터넷 웹 사이트에 공시한다.

절차상 보호 규약은,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자 학부모의 모국어로 학부모의 권리를 모두 설명 해야 한다. 만약 학부모의 모국어나 대화의 수단이 서면으로 된 언어가 아닌 경우, 공립 교육기관은 이 절차상 보호 규약이 구두로 통역 되거나 해당 학부모의 모국어로 된 별도의 대화 수단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각 기관은 이 보호 규약이 제대로 통역 되었고 학부모가 그 내용을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서면 증거 자료를 보관 해야 한다.

모국어

학부모는 자신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제한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 모국어라 함을 다음사항을 의미한다:

-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
- 아동과의 모든 직접적인 접촉 시 (아동의 장애 판정 평가 시를 포함하여), 아동이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시각, 청각 장애자 혹은 서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사 소통 수단, 즉 수화, 점자, 구술 대화를 지칭한다.

전자 우편(E-mail)

학부모의 상황이 가능하다면 전자 우편으로 공지를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 공립 교육기관이 학부모가 전자 우편으로 공지를 받을 시 해당 학부모는 다음 사항을 e-mail로 받게 된다:

- 사전 서면 공지;
- 절차상 보호 규약 공지;
- 적법 절차 이의제기와 관련된 공지

사전 서면 공지

학부모는 자녀들의 특수교육에 관한 공립 교육기관의 조치에 대한 서면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공지

공립 교육기관은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매년 서면 통지를 한다:

- 공립 교육기관이 학생의 장애 여부 판정, 평가, 교육 프로그램, 학교 배치,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제공 등의 개시 또는 변경을 제안하거나;
- 공립 교육기관이 학생의 장애 여부 판정, 평가, 교육 프로그램, 학교 배치,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제공 등의 개시 또는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 공지가 학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치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립 교육기관은 일시에 해당

서면 공지를 한다.

서면 공지 내용

서면 공지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 공립 교육기관이 제안하거나 거부 하려는 조치에 대한 설명;
- 공립 교육기관의 해당 조치에 대한 제안, 거부에 대한 사유;
- 공립 교육기관이 해당 조치에 대한 제안, 거부 결정시 사용된 평가 과정, 검증, 기록, 보고서;
- 장애자 교육개선 법(IDEA)의 절차적 보호 규약 조항에 의거하여 학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보호 대책에 대한 설명;
- 해당 조치에 대한 제안, 거부가 평가(evaluation)를 위한 초기 의뢰(initial referral)가 아닌 경우 절차적 보호 규약 사본을 학부모가 입수할 수 있는 방법;
- 학부모가 장애자 교육개선 법(IDEA)의 이해 도모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 아동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 Education Program) 팀이 고려하고 있던 대체 선택에 대한 설명과 그 선택이 왜 거부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와; **더불어**
- 공립 교육기관이 왜 그 해당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했는지에 관한 사유에 대한 설명

동의

공립 교육기관은 아동의 특수교육과 그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 이행에 앞서 아동의 장애 판정 여부 평가를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학부모는 동의를 철회 할 권리도 있다. 장애 판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학부모 동의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학부모 동의는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 학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조치와 관계가 있는 모든 정보는 해당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충분히 전달 되었다;
- 학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조치에 대한 내용을 해당 학부모가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했으며, 동의서에는 해당 조치와 공개될 기록의 목록 (기록이 있는 경우),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 되었다;
- 학부모의 동의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행위이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학부모가 동의를 철회할 시에는 동의 철회 전에 이행된 조치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

초기 평가를 위한 학부모 동의

공립 교육기관이 아동의 특수교육 및 제반 서비스 실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공립 교육기관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제안된 조치에 대해 사전 공지를 학부모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
- 부모의 동의를 구한다.

공립 교육기관은 해당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초기 평가를 함에 있어 부모로부터 충분히 인지된 동의를 구하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학부모의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는 곧바로 해당 아동에게 특수교육과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학부모가 동의했음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주 정부 보호 대상자(Wards of the State)를 위한 특별 규정

해당 아동이 주 정부의 보호 대상자이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 일시에는 장애 판정 여부 평가를 위한 부모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다:

- 해당 기관의 합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주 법에 따라 친권이 해지 된 경우; 또는
- 판사가 아동의 교육적인 결정과 그에 따르는 평가 실행에 있어 부모가 아닌 제 3자가 권리를 갖도록 지정한 경우

서비스를 위한 학부모의 동의

해당 기관은 특수교육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처음 제공하기 전에 충분히 인지된 동의를 부모로부터 구하도록 합당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해당 기관은 아동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팀의 권유에 따라 아동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특수교육과 이에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어떤 합의나 판결을 얻기 위해 적법한 절차나 조정 절차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부모가:

- 해당 자녀에게 특수교육과 제반 서비스 제공을 동의 하지 않는 경우;
- 처음 자녀의 특수교육과 제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만약 부모가 처음 특수교육과 제반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기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요청함에 있어 무응답인 경우, 해당 기관은:

- 무상 공립교육(FAPE) 대상인 아동에 대한 위반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 해당 아동을 위한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의 개발과 회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재평가를 위한 학부모의 동의

해당 기관은 아동의 개별적인 재평가 실시에 앞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기관이 다음사항을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다:

-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납득할 만한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 부모가 동의 여부에 대해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부모가 재평가에 대해 동의하기를 거부한다면 해당기관은 (요구 사항은 아니나) 중재와 적법 절차를 통해 부모의 거부를 번복할 수 있다. 초기 장애 여부 평가에 있어서, 해당 기관이 재평가 실시를 거부해도 현행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학부모 동의를 위한 필요 서류

해당 기관은 초기 장애 여부 평가를 위한 부모 동의를 위해, 특수교육과 제반 서비스를 처음 제공할 시, 해당 학생의 재 평가 시 그리고 주 정부 보호대상자(Wards of the State) 장애 자녀의 초기 장애 평가를 위해 부모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서류는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해 시도한 기록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전화 통화 기록과 통화 시도 내역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의 결과;
- 부모에게 보내진 통지 내용과 그에 따른 부모의 응답의 사본; 그리고
- 부모의 집 혹은 직장을 방문한 세부 기록과 방문 결과

기타 동의 요건

부모의 동의가 다음의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해당 기관이:

- 해당 자녀의 초기 평가와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심사하기 전; **혹은**
- 해당 자녀에게 다른 학생들의 부모로부터도 동의가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한 검사나 평가를 실시하기 전.

해당 기관은 부모가 특정 조치에 동의하기를 거부한 것을 다른 서비스, 혜택 혹은 타 조치에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로 등록시킨 경우에는 공립 교육기관은 해당 학생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중재나 적합한 절차를 사용 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기관은 동일한 서비스 부여가 적합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

- 해당 학부모가 자녀의 초기 평가와 재 평가를 위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혹은**
- 해당 학부모가 동의를 하라는 요청에 무반응일 경우

외부 교육 평가

부모가 공립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자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는 공립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녀에 대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의

- 외부 교육 평가란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공립 교육기관이 아닌 적절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검사와 평가 절차를 말한다.
- 공비용(Public Expense)이라 함은 공립 교육기관이 전체 평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평가 활동을 학부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 아동의 학부모는 장애자 교육개선 법(IDEA)에 의거하여 아동에 대한 외부 교육 평가를 아래 절차에 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립 교육기관은 학부모가 외부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외부 교육 평가 장소; **그리고**
- 외부 교육 평가에 대한 공립 교육기관의 심사 기준

공립 교육기관의 검사 기준

공비용으로 외부 교육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평가 장소, 심사 관 자격 등의 외부 교육 평가 기준은 공립 교육기관이 평가를 실시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 또한 이 기준이 외부 교육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위에 명시한 기준을 제외하고는, 공립 교육기관은 외부 교육 평가를 공비용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떤 조건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비용으로 외부 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부모가 공립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자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는 공립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녀에 대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학부모가 공비용으로 외부

교육 평가를 요청할 경우, 공립 교육기관은 부당하게 지체하지 말고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만 한다:

- 공립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가 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적법 절차 심의회실시(Due Process Hearing); 또는
- 공비용으로 외부 교육 평가 제공 (단 학부모에 의해 이뤄진 외부 평가가 공립 교육기관의 평가 기준에 미달이라는 사실을 해당 공립 교육기관이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입증한 경우는 제외.)

공립 교육기관이 주최한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공립 교육기관의 평가가 적절한 것이라는 최종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학부모는 외부 평가를 할 권리가 있으나 이때에는 공비용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는 없다.

학부모가 외부 교육 평가를 요청할 경우, 공립 교육기관은 학부모가 공립 교육기관의 평가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 볼 수 있다. 단, 학부모의 해명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공립 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공공 경비로 외부 교육 평가를 해당 학부모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공립 교육기관의 평가를 변호하기 위한 적법 절차 심의회를 실시해야 한다.

학부모 부담으로 실시되는 외부 평가

학부모는 언제나 자체 비용 부담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유자격 전문가로부터 외부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팀은 학부모가 자비로 실시한 평가가 공립 교육기관의 심사 기준에 합당한 경우, 무상 공립교육(FAPE) 제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학부모의 외부 평가 결과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학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된 외부 평가 결과는 아동에 관한 적법 절차 심의회에 증거로 제출 될 수 있다.

심의회 위원에 의한 평가 요청

행정 심의 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적법 절차 심의회에 의해 외부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비용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정보의 기밀 유지

학부모는 자녀의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해당 자녀에 대한 공립 교육기관의 기록이 제대로 기재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권리도 지닌다. 학부모는 자녀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에 있어 동의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학부모는 공립 교육기관이 자녀의 교육 기록을 비밀로 보관할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를 지닌다. 또한 그

기록이 더 이상 불필요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게 파기를 요청할 권리도 있다.

정의

정보 파기라 함은 개인 정보를 삭제 또는 물리적으로 파손하여 개인 정보 식별이 불가능하게 함을 뜻한다.

교육 기록(Education records)이란 미 연방 규정 제 34조 99항(34 CFR Part 99)의 시행령인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에 관한 법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FERPA]1974)에 명시된 “교육 기록”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록 유형을 의미한다.

참여기관이란 함은 장애인 교육개선 법 B항(IDEA Part B)에 의거하여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보관, 활용,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출처로서의 기관이나 기구를 의미한다.

개인 식별 정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 한다:

- 아동, 아동의 부모, 기타 가족의 이름;
- 아동의 주소;
- 아동의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가능한 것; 또는
- 아동의 신원을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적 특징이나 기타 정보

보호대책

참여기관은 개인 식별 정보 수집, 보관, 공개, 파기하는 단계에 있어 정보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공립 교육기관은 개인 식별 정보 비밀 유지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뒤편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책 외에 연방, 주 정부 법령과 규제가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관할 하는 모든 공립 교육기관의 담당자는 개인 식별 정보 비밀에 관한 주 정부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여기관은 해당 기관 내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의 명단과 직위를 일반 열람을 위해서 비치해야 한다.

동의

공립 교육기관은 개인 식별 정보를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에 의거하여 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참여기관의 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공개 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에 따라 장애 아동에게 무료 공립교육(FAPE)을 실시하려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 될 시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장애 아동의 범죄 행위를 보고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과 사법 당국에게 의뢰하거나 이들 기관이 내리는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공개 시에는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에 관한 법(FERPA)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다.

교육기관 및 기구는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에 관한 법(FERPA)이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교육 기록의 정보를 참여기관에 공개할 수 없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공립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정책과 제재를 개발해 왔으며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과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에 관한 법(FERPA)에 의거하여 개인 정보의 비밀 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정책과 절차의 준수를 보장한다.

각 공립 교육기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 식별 정보의 비밀 보장 요건을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통지 방법에 관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통지서를 주 내 다양한 인구 집단의 모국어로 제공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
- 개인식별 정보를 유지해야 하는 대상 아동과 그 정보의 형태;
- 개인 식별 정보의 보관, 제3자 공개, 보유 및 파기에 관하여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요약 설명;
- 학부모가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 적용되는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설명;
-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에 관한 법(FERPA)에 따른 권리 및 연방 규제법 제 34조 §99항 (34 CFR §99)의 시행 규정을 포함하여 이 정보에 관한 학부모 및 아동의 모든 권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요 신원 확인, 소재지 파악, 평가 활동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 대상 전지역의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는 발행 부수를 가진 신문이나 기타 매체(또는 둘 다)에 해당 조치에 대한 통지를 게재하거나 발표해야 한다.

기록 열람권

각 공립 교육기관은 장애 아동의 학부모가 자녀의 신원 확인, 평가, 학교 배치,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에 따른 무상 공립교육(FAPE) 제공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수집, 보존, 사용하는 아동 관련 교육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공립 교육기관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관련 회의 또는 적법 절차 심의회가 열리기 전 학부모의 기록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45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교육 기록을 열람 검토할 부모의 권리는 다음을 포함 한다:

- 기록의 설명 및 해석에 대한 합당한 요청에 대해 참여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해당기관이 사본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기록 열람 및 검토 권 행사를 저지시키는 경우, 해당 기록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 학부모의 대리인이 기록 열람 및 검토를 할 수 있는 권리

공립 교육기관은 보호인 제도, 별거, 이혼등에 적용되는 주 정부 해당 법률에 따라 학부모의 기록

열람 및 검토 권이 없다고 해당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한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기록 열람 및 검토 권을 지닌다고 간주한다.

열람 및 검토 사실에 대한 기록

장애인 교육개선 법 B항(IDEA Part B)에 근거하여 각 공립 교육기관은 학부모와 기록 열람/검토를 인가 받은 공립 교육기관 직원 외에 교육 기록을 열람 및 검토 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름, 날짜, 목적)을 보존해야 한다. 해당 교육 기록이 한명 이상의 정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정보만 열람 및 검토하거나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각 공립 교육기관은 학부모 요청 시 해당 기관이 수집, 보존, 사용하는 교육 기록의 유형 및 소재지 목록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각 공립 교육기관은 기록 열람 및 검토에 대한 학부모의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교육 기록 사본 발 급료를 학부모에게 부과할 수 있다. 공립 교육기관은 교육 기록에서 정보 검색에 따른 수수료를 학부모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학부모의 요청에 의한 기록 수정

학부모는 장애인 교육개선 법 (IDEA)에 의거하여 수집, 보존, 사용된 자녀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고 자녀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부모는 정보를 보존하고 있는 공립 교육기관에 정보 수정을 요청 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학부모의 요청에 대해 납득할 시간 내에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기관이 부모의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학부모에게 거부 사실과 교육 기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심의회 개최 권리를 통보해야 한다. 교육 기록상의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심의회는 연방 규제법 제 34조 § 99.22 항 (34 CFR §99.22)에 근거한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에 관한 법률(FERPA) 절차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공립 교육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교육 기록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고 아동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심의회가 교육 기록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심의회 결과에 따라 공립 교육기관이 해당 교육기관이 해당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고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심의회 결과에 따라 공립 교육기관이 해당 교육기관이 해당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학부모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또는 수정 불가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기술한 설명서를 자녀의 교육 기록에 첨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자녀의 교육 기록에 첨부할 설명서는:

- 공립 교육기관이 해당 기록 또는 문제시 되는 부분을 보존하는 한, 해당 아동에 대한 기록의 일부분으로써 해당 기관이 보존한다;그리고
- 공립 교육기관이 해당 아동의 기록이나 문제시 되는 부분의 사본을 요청하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함께 설명서가 공개 되어 한다.

정보 파기 절차

공립 교육기관은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에 따라 수집, 보존, 사용하는 개인 식별 정보가 해당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보는 학부모의 요청 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생의 성적, 출석 기록, 이수한 과목, 이수한 학년, 이수한 학수와 같은 영구적인 기록은 무기한 보존 될 수 있다.

학생의 권리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록에 관한 학부모의 권리는 주 정부 법에 따라 장애로 인해 아동이 무능력자가 되지 않는 한 장애 아동이 18세가 되면 자녀에게 이전된다. 장애인 교육개선 법 B항(IDEA Part B)에 따라 부모의 권리가 성년이 된 자녀에게 이양되는 경우에는 교육 기록에 관련된 권리 역시 함께 자녀에게 이양 되어야 한다. 공립 교육기관은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에 따른 권리 이전에 대한 공지를 학부모와 자녀에게 해야만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성년이 될 시 부모의 권리 이양” 부분을 참조 바람.

징계 정보

공립 교육기관은 비장애 학생의 경우에 내려지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장애 학생에 내려진 현재 또는 과거의 징계 조치에 대한 설명서를 해당 학생의 교육 기록에 첨부하고 그 설명서를 송부 할 수 있다. 설명서에는 징계조치가 필요한 학생의 행동에 대한 설명, 그에 따른 징계조치에 대한 설명, 해당 학생 및 기타 관련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 송부되는 교육 기록에는 해당 학생의 현재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현재 또는 과거에 받은 징계 조치에 대한 설명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 학생의 징계

학부모는 공립 교육기관이 자녀에게 특정 징계 행위를 내린 경우 이에 대해 보호 대책 마련 및 특별 절차를 밟을 권리를 지닌다. 학생이 행동 규칙 위반으로 한 학년도 중 10일 이상 전학 (school removal) 조치를 받은 후에는 다시 교육 서비스를 재개 해야만 한다.

정의

장애 학생의 징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규제약물(controlled substance)은 규제약물 법(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812(c)) 제

202 (c) 항의 부칙 1, 2, 3, 4 또는 5에 규정되어 있는 약물(drug)이나 기타 물질 (substances)을 지칭한다;

- 불법 약물(illegal drug)은 규제 약물을 의미하나 의료 전문 면허 소지자의 감독 하에서 사용되거나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 혹은 연방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사용 되는 약물은 이에 포함 되지 않는다;
- 무기는 미 헌법 제 18 편 930조 1항 (g)호의 두 번째 문장 (paragraph (2) of the first subsection (g) of section 930 of title 18, U.S.C.)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 무기”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심각한 신체 상해(serious bodily injury)란 상당한 사망 위험, 극도의 신체적 고통, 장기간에 걸친 명백한 용모 손상(disfiguration), 신체 일부/장기/정신적 능력의 장기적인 기능 손상 등을 포함한다 (18 U.S.C. 13645(h)(3)).

교직원의 권한

교직원은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한 장애 학생을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징계 방침에 따라 교칙 위반 시 1회 최대 10일 까지 다음 사항으로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 되지 않는 한 전학을 시킬 수 있다:

- 임시 대안 교육 시설;
- 기타 다른 환경; 혹은
- 정학

전학 조치(한번에 최대 10일 까지)가 누적되어서 한 학년도에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자신의 계획된 목표 성취를 이루도록 돕기 위해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팀은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 해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한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 배치 변경이 적합한지 여부를 케이스마다 다른 특수 상황임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학교 배치 변경은 연속 10일 이상 혹은 같은 방식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전학 조치가 모두 해당 된다. 징계 조치가 학교 배치 변경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은 해당 조치 결정이 내려진 당일에 통지가 이뤄져야 하며 통지서에는 절차적 보호 규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 징후 결정

학생 행동 규범 위반으로 학교 배치 변경이 결정된 날로부터 수업일 수로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 학부모,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팀은 해당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 교사의 소견 및 학부모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해당 학생의 문제 행동이:

- 학생의 장애에 의해 야기되었거나 장애와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또는
- 공립 교육기관이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실행하지 못함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인지의 여부

위 사항 중 어느 하나가 해당된다고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팀이 결정한 경우에는 학생의 문제 행동은 학생의 장애에 따른 징후로(manifestation of the child's disability) 결정된다.

학생의 문제 행동이 해당 학생의 장애 징후인 경우에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 해당 학생에게 기능적 행동 평가(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를 실시하고 해당 교육기관이 예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동 치료 계획(behavioral intervention plan) 을 실행한다;
- 해당 학생의 기존의 행동 치료 계획과 행동 개입 계획을 검토하고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한다; 그리고
- 학부모와 공립 교육기관이 행동 치료 계획 수정의 일환으로 학교 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학생을 원래 배치된 학교로 돌려보내되, 단 학생이 약물이나 무기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와 관련되어 임시 대안 교육 시설(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에 보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문제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인한 징후가 아닌 경우 비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는 관련 징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적절한 교육 서비스는 계속되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학교 배치 변경

문제의 행동이 장애로 인한 징후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이 10일 이상 전학(school removal) 조치를 받아 학교 배치 변경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또는 약물이나 무기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와 관련되어 임시 대안 교육 시설(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학생이 다른 환경에서라도 일반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이 정한 목표를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은 이러한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능적 행동 평가와 행동 치료 서비스 및 해당 행동 위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문제 교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해당되는 경우).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팀은 적절한 서비스 및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될 장소를 결정한다.

임시 대안 교육 시설

학생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경우, 교직원은 문제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 징후로 판단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을 수업 일수로 최대 45일간 임시 대안 교육 시설(IAES)로 보낼 수 있다:

- 등교 시, 수업 중 또는 교내에서, 또는 해당 주 또는 지역 공립 기관 관할 내의 학교 행사장이나 행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 수업 중이나 교내에서, 또는 해당 주 또는 공립 교육기관 관할 내의 학교 행사장에서 의도적으로 불법 약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고, 또는 규제 약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혹은**
- 수업 중이나 교내에서, 또는 해당 주 또는 지역 공립 기관 관할 내의 학교 행사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

징계 이의 신청

장애로 인한 징후 결정 혹은 징계로 인한 학교 재 배치에 대한 학교의 결정에 학부모가 반대할 경우, 해당 학부모는 행정 심의 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과 해당 학교에 적법 절차 심의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해당 학교가 학생이 현재 학교에 계속 배정됨으로 해서 다른 학생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은 해당 학부모와 행정 심의 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본 규약의 “의견 차이 해결” 부분에 기술된 절차에 의하여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적법 절차 심의회를 진행한다. 심의회는 개최 요청 일로부터 수업 일로 20일 이내에 열려야 하며 심의회 개최 후 수업 일로 1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징계 이의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행정법 판사는:

- 해당 학생을 전학 이전에 속해있던 학교로 돌려보내거나; **혹은**
- 행정법 판사가 현행 학교에 그대로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학생과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업일 45일 이하의 기간동안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시설로 장애 학생의 학교 배정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학부모나 공립 교육기관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학부모와 교직원이 달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행정법 판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규정된 기간(45일 이하)이 만료될 때 까지 둘 중에서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임시 대안 교육 시설에 남아있게 된다.

장애 여부가 아직 판정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교칙 또는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했으나 특수교육 여부가 판정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립 교육기관이 문제된 행동이 발생하기 전부터 학생의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학생은 규정되어 있는 모든 보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징계 대상이 된 행위 발생 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해당 기관이 학생의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학생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학부모가 해당 교육 구의 교육감, 행정 담당자 또는 학생의 담당 교사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
- 학부모가 평가를 요청한 경우; 또는

•학생의 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이 해당 학생이 보이는 행동 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특수교육 책임자 또는 해당 공립 교육기관의 기타 감독관에게 직접 표명한 경우

장애 학생의 부모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공립 교육기관은 학생의 장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학생에 대한 검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또는**
-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장애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립교육기관이 징계 조치 이전에 학생의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해당 학생은 비장애 학생이 유사한 행위를 범했을 때 적용되는 동일한 징계 조치를 받는다.

학생이 징계 조치를 받고 있는 도중에 학부모가 자녀의 장애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은 학교 당국이 결정한 학교 배정 상태를 유지한다. 공립 교육기관의 평가와 학부모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뒤이어 징계에 관한 모든 절차적 보호 규약이 수행된다.

법 집행 기관과 사법 당국에 의뢰 및 이들 기관의 조치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은 공립 교육기관이 범죄를 적절한 당국 그리고 법 집행 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 사법 당국은 장애 학생의 범죄에 대해 연방 법과 주 정부 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학생의 범죄를 신고하는 교육기관은 연방 규제법 학생 기록 조항(COMAR 13 A.08.02, Student Records)의 허용 한도 내에서 학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정책에 명시된 학부모 동의 예외 조항에 따라 학생의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학부모가 자녀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경우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의 규정상 공립 교육기관이 무상공립 교육(FAPE)의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했는데도 학부모가 자녀를 사립 학교나 시설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립 교육기관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 학생이 사립학교나 시설에서 받는 교육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의 규정상 공립 교육기관이 무상공립 교육(FAPE)의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했는데도 학부모가 자녀를 사립 학교나 시설에 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립 교육기

관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 학생이 사립학교나 시설에서 받는 교육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단, 연방 규제법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은 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치한 장애아 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동의 요구가 해결되는 쪽으로 해당 아동을 배치해야 한다. 무상 공립교육(FAPE)의 이용 가능성과 재정상의 책임에 관해 학부모와 공립 교육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에 따른 적법 절차 심의회 절차를 밟는다. 구체적인 정보는 “의견 차이 해결 편”을 참조한다.

이미 공립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던 장애 학생의 학부모가 공립 교육기관의 동의나 의뢰 없이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자녀를 등록시키는 경우, 행정법 판사나 법원은 학부모의 등록에 앞서 공립 교육기관이 무상공립 교육(FAPE)의 기회를 적절한 시기에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립학교 배치가 적절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록금을 학부모에게 배상할 것을 공립 교육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행정법 판사나 법원은 학부모의 사립학교 배치가 공립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주 정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배상 한도(Limitation on Reimbursement)

행정법 판사나 법원은 다음의 경우 배상액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학부모가 자녀를 공립 교육기관에서 전학 시키기 전 가장 최근에 참석한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팀 회의에서 무상 공립교육(FAPE)을 제공하기 위한 공립 교육기관의 학교 배치를 거부한다는 의사(우려 표명 및 공적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시키겠다는 의사 포함)를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또는
- 학부모가 자녀를 공립 교육기관에서 전학 시키기 10일 전까지(공휴일과 겹치는 근무일 포함) 자녀의 공립교육기관 배치에 관한 우려를 포함하여 자녀에 대한 전학의사를 해당 기관에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 부모가 자녀를 공립 교육기관에서 전학 시키기에 앞서 해당 공립교육기관이 사전 통지 요건에 따라서 자녀를 평가하겠다는 의사(평가 목적에 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 포함)를 학부모에게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자녀를 평가에 임하게 하지 않은 경우; 또는
- 학부모가 취한 행동을 사법기관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

상기한 통지 요건에도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상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학교가 학부모의 통지제공을 방해한 경우,
- 학부모가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 통지요건에 따른 통지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상기한 통지 요건을 준수할 경우 아동이 신체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 또는 심의회 혹은 행정법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배상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부하지 않는다:
- 학부모가 문맹이거나 영어로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
- 상기한 통지 요건을 준수할 시 해당 자녀에게 육체적 손상 또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생이 성년이 될 시 학부모의 권리 이양

메릴랜드 주에서는 장애 아동이 성년이 되어도 부모의 권리를 장애 아동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단 몇몇 제한적인 상황은 예외다.

메릴랜드 주법에 따르면 몇몇 제한적인 특수 경우에는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에 따라 학부모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장애 학생에게 이전 해야 한다. 학생이 18세에 도달했고 주법에 따라 무능력자로 판결 받지 않았으며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학부모가 부재하거나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이 대리할 부모를 지명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권리 이양을 요청한다;
- 공립 교육기관이 전년도에 학부모를 참여 시키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 후에도 학부모가 아동의 특수교육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 학부모가 특수교육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단호히 거절했다;
- 학부모 한 쪽 또는 양쪽 모두가 장기 입원, 시설 수용, 중병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아동에의 권리이전에 동의 했다; 또는
- 아동이 부모 집 밖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공립 교육기관의 보호나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

장애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18세에 이른 자녀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학생이 주법에 따라 무능력자로 판결 받지 않은 경우, 학부모나 학생은 권리를 이전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법 절차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장애 학생을 대리부모가 연방 및 주 정부의 법령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대리행사 해 온 경우에 공립 교육기관은 연방 및 주 정부 법령이 규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학생과 대리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학생이 주법에 따라 무능력자로 판결 받지 않았고 권리 이전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에 따라 대리부모에게 부여된 기타 모든 권리는 해당 학생에게 이전해야 한다.

의견 차이 해결(Resolving Disagreements)

다음은 학부모와 공립교육기관이 아동의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해결 방법 중에는 조정 절차, 주 정부 상대 이의 제기, 적법 절차 이의 제기가 있다.

조정 절차(Mediation)

조정 절차는 장애 아동의 부모와 아동이 재학중인 공립 교육기관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다.

효과적인 조정 절차 기술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행정 심의 국(OAH)의 직원이 중재 역할을 실시한다. 행정 심의 국에서 선발된 직원은 개인적 또는 직업적으로 이해관계가 중재 당사자들과 있어서는 안 된다.

- 조정 절차는 장애 학생의 학교 또는 학부모에게는 조정 절차를 권장하기 위한 학부모 면담을 포함한 모든 제반 비용이 들지 않는다.
- 해당 교육기관과 행정 심의 국에 조정 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 조정 절차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학부모는 해당 교육기관과 메릴랜드 주 교육부의 웹사이트 (www.marylandpublicschools.org) 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의 특수교육 사무실 혹은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교육/조기 개입 서비스 전화 (410) 767-7770
- 학부모나 공립 교육기관은 조정 절차 진행 중 변호사를 대동 할 수 있다.
- 조정 절차는 서면 접수 20일 이내에 학부모와 해당 기관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열린다.
-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정 절차에서 진행된 토의사항은 비밀 사항이며 후속 적법 절차 심의회나 민사 소송의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학부모 혹은 해당 기관은 조정 절차 개시 전에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다.
-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은 해결 권한이 있는 주 법원이나 연방 지방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서면 합의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공립 교육기관은 조정 절차를 학부모의 적법 절차 심의회에 대한 권리 행사를 지연 또는 부인하기 위해 사용 할 수 없다.

조정 절차 권장을 위한 회의

공립 교육기관은 중재 절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부모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조정 절차의 혜택을 설명하고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주 상대 이의와 적법 절차 이의의 차이

조정 절차 외에, 학부모는 공립 교육기관과의 의견 불일치 해결을 위해 주 정부 상대로 이의(State Complaint)를 제기 또는 적법 절차 이의(Due Process Complaint) 제기를 할 권리가 있다. 이 두 선택권은 모두 다른 법과 절차에 따른다.

장애자 교육개선 법(IDEA)은 주 정부 상대 이의 제기와 적법 절차 이의에 대해 별개의 절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설명한바, 개인이나 기관은 공립 교육기관이 장애자 교육개선 법 (IDEA) 준수를 위반했음을 주 정부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부모 또는 공립 교육기관은 장애 아동에 대한 장애 판정, 평가 혹은 학교 배치, 무상 공립교육(FAPE) 제공등과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 직원은 기한이 별도로 연장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주 정부 상대 이의를 해결해야만 한다. 행정법 판사는 적법 절차 이의를 (조정 절차나 문제 해결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심의하고 행정법 판사가 부모나 교육기관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해결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을 참조 바람.

주 상대 이의(State Complaint)

개인이나 기관은 메릴랜드 주 교육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이의서가 장애자 교육개선 법 규정에 따른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이나 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이 특수교육 요건에 관련된 연방 또는 주 정부 법이나 규제사항을 위반했거나 해당 교육기관이 적법 절차 심의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 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 상대로 이의 신청 시, 보내야 할 주소는 다음과 같다. Assistant State Superintendent,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Early Intervention Services, MSDE,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 메릴랜드 주 교육부에 주 상대 이의를 신청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에 이의서 사본을 동시에 우송해야 한다. 이의 신청을 위한 상세 절차와 양식은 메릴랜드 주 교육부 웹사이트 www.marylandpublicschools.org 혹은 이의 심사 및 적법 절차 심의 국, Complaint Investigation and Due Process Branch 전화 (410) 767-7770.

주 정부 상대로 제기한 이의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해당 교육기관이 연방 혹은 주 법이나 규제의 요건을 위반했다는 사항;
- 위반사항의 근거가 되는 사실;
- 이의 신청을 하는 개인/기관의 연락처 및 서명;

- 이의 신청이 특정 아동에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이라면:
 - 해당 아동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 해당 아동이 재학중인 학교의 이름;
 - 집이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연락 가능한 정보 그리고 아동이 재학중인 학교명;
 - 아동의 문제에 대한 성격에 대한 사실 및 설명; 그리고
 - 이의신청이 된 시점에서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

주 정부 상대의 이의 제기는 주 정부가 이의를 접수하기 1년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위반 이어야 한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이의 신청 접수 60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특정 이의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이 있거나;
- 학부모와 해당 교육기관이 조정 절차를 시도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 수단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한 연장에 합의한 경우

이에 대해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 이의 신청자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이의 제기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
-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심의하고 해당 교육기관이 연방 및 주 법의 요건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을 한다;
- 이의 신청 제기자와 교육기관에게 이의 신청에 제기된 주장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사실 확인 과 결과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부한다.

서면 결정문은 최종 결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이의 제기 신청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 방법, 협상,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최종 결정 사항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절차도 포함해야 한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가 공립 교육기관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최종 서면 결정문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향후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 개선 및 모든 장애 아동에 대한 앞으로의 적절한 서비스 계획에 대한 설명도 포함한다.

주 상대 이의 해결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절차와 함께 형식적인 성격이 조금 배제된(less formal) 방법들이 동원되며 권장된다. 만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해결된다면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연방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행할 필요가 없다.

적법 절차 심의회에도 제기된 주 상대 이의 신청 해결

메릴랜드 주 교육부가 적법 절차 심의회를 통해서도 제기된 이의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 또는 주 상대로 제기된 이의가 적법 절차 심의회에 제기된 복수의 이의 건수 중에 포함된 경우, 주 교육부는 적법 절차 심의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 정부 상대로 한 어느 이의 건도 별도로 취급 해야 한다. 그러나 주 교육부를 상대로 한 이의 제기가 적법 절차 심의회에도 올려진 이의 건수가 아닌 경우에는 위에 명시된 절차와 일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이미 동일한 당사자간의 이의가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판결이 난 문제로서 또 다시 동일한 당사자간에 의해 주 정부 상대로 한 이의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이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그 사실을 이의 제기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적법 절차 이의(Due Process Complaint)

학부모 또는 공립 교육기관은 장애 아동에 대한 장애 판정, 평가 혹은 학교 배치, 무상 공립교육 (FAPE) 제공등과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적법 절차 이의는 부모 또는 해당 기관이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지 못했던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되는 행위의 2년 이내에 발생했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기가 되어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이 적법 절차 이의에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특히 거짓말을 했거나 장애자 교육개선 법(IDEA)의 규정에 따라 제공 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부모가 이의 신청을 기한 안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학부모 또는 공립 교육기관(혹은 양측의 변호사)은 상대방과 행정 심의 국(OAH)에 적법 절차 이의 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서는 아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비밀유지가 되어야 한다.

적법 절차 이의를 신청하려는 학부모는 조정 절차와 적법 절차 이의 요청서(Request for Mediation and Due Process Complaint)를 작성해야 하며 이 양식은 아동이 재학중인 교육기관과 메릴랜드 주 교육부 웹사이트 www.marylandpublicschools.org에서 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기관의 특수교육 사무실 혹은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교육/조개 개입 서비스 과 전화 (410) 767-7770.

적법 절차 이의서의 구비 요건

적법 절차 이의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아동의 이름;
- 아동의 거주지 주소 (혹은, 거주지가 없는 아동의 경우 연락 가능한 정보);

- 아동이 재학중인 학교의 이름;
 -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립 교육기관의 이름 (즉,지역 학교);
 - 제안되거나 거부된 발의 또는 변경과 관련된 아동의 문제(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에 대한 설명; 그리고
 - 해당 문제의 해결책 (이의서 제출 당시 당사자가 알고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 학부모 또는 공립 교육기관은 양측(또는 양측의 변호사)이 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 절차 이의를 신청할 때까지 적법 절차 심의회를 열 수 없다

적법 절차 이의에 대한 답변

적법 절차 이의가 신청되면, 아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실시해야만 한다:

- 학부모에게 무료 또는 저 비용의 법률 및 다른 가능한 서비스를 통지해야 한다;
- 학부모에게 절차적 보호 규약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 학부모에게 조정절차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이 적법 절차 이의 서를 통해 부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 통지문을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이의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답변서를 발송해야 한다:

- 해당 기관이 해당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 해당 기관이 고려했던 모든 대안들과 이 대안들이 기각된 이유에 대한 설명;
- 절차 보호 규약에 의하여 장애 학생의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보호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 통지서가 아동의 장애여부 평가를 위한 초기의뢰서가 아닐 경우 절차적 보호 규약 사본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 학부모가 장애인 교육개선 법 (IDEA)의 조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연락처 정보

이러한 답변서에서 어떤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학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서가 이의 제기에 충분한 요건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이의 제기를 받은 당사자(부모 또는 해당 기관)는 상대방에게 적법 절차 이의 서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적법 절차 이의 서에 제기된 문제들을 특별히 해명하는 답변서를 우송해야 한다.

충분한 공지

적법 절차 이의서는 이의서 접수 당사자가 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심의 국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이의서의 내용 요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는 한 이의서는 그 내용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 한다. 이의서가 충분한 내용여건을 가지지 못했다는 통지를 접수한지 5일 이내에 행정 심의국은 적법 절차 이의서의 내용 요건이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

하며 양측에 서면으로 즉각 통보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에 한해 적법 절차 이의 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또는 행정 심의 국이 허용할 경우에 적법 절차 심의회 개최 전 늦어도 5일 전까지 문제 해결회의(resolution meeting)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수정된 적법 절차 이의 서를 제출할 경우 문제 해결회의와 적법 절차 심의회 일정은 수정된 이의 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절차 진행 시 학생의 학교 배정 상태

학부모와 공립 교육기관이 달리 합의 하지 않는 한, 행정상 또는 사법 절차 진행과정 동안 (징계 조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학생의 현행 학교 배치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행정 또는 사법 절차가 공립학교 입학 신규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공공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한다. 행정판사의 판결이 학부모의 의견과 일치하여 학생의 학교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후속 이의제기 진행 중에도 변경된 현행 학생의 학교 배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문제 해결 과정

학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 서를 수령한지 15일 이내에, 그리고 적법 절차 심의회 개시 전에 공립교육기관은 학부모와 이의 서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개별교육 프로그램(IEP) 팀의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야 한다. 회의는:

- 해당 기관을 대신해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 학부모가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 역시 변호사를 동반할 수 없다.

학부모와 교육기관 양측은 회의에 참석할 적합한 개별교육 팀의 인원을 결정한다.

이 회의의 목적은 부모가 적법 절차 이의서 제기의 근거가 되는 사항을 토의함으로써 해당기관에게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

다음 경우에는 문제 해결회의는 필요하지가 않다:

- 부모와 공립 교육기관이 문제 해결회의를 가지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 한 경우;
- 부모와 공립 교육기관이 조정절차를 가지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 공립 교육기관이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공립 교육기관이 이의서 접수 30일(문제 해결 기간)이내에 학부모가 만족 할만큼 이의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 절차 심의회(Due Process Hearing)가 열린다.

30일 간의 문제 해결기간 종료 후 45일간의 최종 결정 기간이 개시된다. 단 “30일 해결 기간 내 문제 조정” 또는 “신속 일정” 의 경우가 적용 되는 상황은 예외.

30일 해결 기간 내 문제 조정

학부모와 교육기관이 해결 과정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이거나 해결 과정을 가지지 않기로 하거나, 조정 절차를 갖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문제 해결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을 지연시키며 문제회의가 진행되어야 열리는 적법 절차 심의회도 지연시키게 된다.

교육기관이 학부모의 문제 해결회의 참석 유도를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노력 과정을 문서화 한 후에도 학교측이 학부모를 문제 해결회의 참석 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은 30일 간의 해결기간 종료 시 행정법 판사에게 적법 절차 이의 서를 기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학부모 참석을 종용했던 노력을 문서화 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려 시도했던 기록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화 통화, 시도의 상세한 기록 과 그 결과;
- 학부모에게 우송된 통지문과 답신 사본; 그리고
- 학부모의 자택 혹은 직장으로 방문한 상세 기록과 그 방문 결과

공립 교육기관이 학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 서를 접수한지 15일 이내에 문제 해결회의를 열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학부모는 심의회 시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4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학부모와 공립 교육기관이 문제 해결회의를 가지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적법 절차 심의회의 45일 일정은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조정 절차 혹은 문제 해결회의 시작 후 그리고 30일간의 문제 해결 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학부모와 공립 교육기관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데 서면 동의한 경우에는 적법 절차 심의회를 위한 45일간의 일정이 그 합의 다음날로 개시된다.

학부모와 공립 교육기관이 조정 절차를 가지기로 합의 한 경우, 30일 해결기간 종료 시 양측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조정 절차를 계속 한다는 서면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 중 한쪽이 조정 절차를 철회할 시에는 그 다음날 45일간의 적법 절차 심의 일정이 시작된다.

문제 합의

문제 해결회의에서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학부모와 공립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

- 학부모와 해당 교육기관의 의사 결정권이 있는 책임자가 합의 문서에 서명; 그리고
- 관할 지역 내 어느 주 법원(이런 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있는 주 법원) 혹은 연방 지방법원에서도 집행 가능한 합의서여야 한다.

양측이 문제 해결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룬 경우, 당사자중 어느 한측은 합의문을 3일 이내에 무효화 할 수 있다.

적법 절차 심의회(Due Process Hearing)

학부모 또는 분쟁에 연루된 교육기관은 적법 절차 이의가 제기 될 시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를 가질 기회가 있다.

행정법 판사

행정법 판사는(Administrative Law Judge):

- 행정 심의 국의 직원이다;
- 심의회에 객관성과 상충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 장애자 교육 개선법과 관련 연방 및 주 규제사항, 이에 따른 법 해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 심의회를 진행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며 적절하고 기본에 맞는 일관된 법률 행위를 행사할 지식과 능력이 있다.

적법 절차 이의에 제기 될 수 있는 문제

관련 당사자(학부모 혹은 교육기관)중 이의를 제기한 측은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이의 서에 제기되지 않은 문제를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제기 할 수 없다.

심의회 권리

적법 절차 심의회(장애인 교육개선 법 징계 절차 심의회를 포함)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변호사 및 장애학생 문제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동하고 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증거 제출, 대질, 반대 신문을 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 심의회 개최 5일전 까지 자신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심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심의회 기록을 입수할 수 있는 권리,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자 축어식 심의회 기록도 입수할 수 있다.;
- 사실 인정 문 및 판결에 대한 기록을 입수할 수 있는 권리,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자식 기록도 입수 할 수 있다.

추가 정보 공개

당사자는 심의회 개최 5일전 까지 당시까지 작성된 모든 평가자료, 심의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평가자료에 기초한 권고 사항 등을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심의회 행정법 판사는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관련 평가자료나 권고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 시킬 수 있다.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자녀를 참석 시키고;
- 심의회를 공개하고; 그리고
- 심의회, 사실 인정 문 및 판결에 대한 기록을 무료로 입수할 수 있다.

심의회 판결

행정법 판사는 학생이 무상 공립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실제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판결을 해야 한다. 절차상의 위반을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법 판사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무상 공립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판결할 수 있다:

- 절차상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이 무상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를 방해 받은 경우;
- 자녀의 무상 공립교육 제공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의 기회를 공립 교육기관이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 공립 교육기관이 교육혜택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

이외에도, 행정법 판사는 장애인 교육개선 법 B항(34 CFR 300.500에서 300.536)의 규정에 따라 절차상 요건들을 준수하도록 공립 교육기관에 명령할 수 있다.

별도의 적법 절차 이의 제기

장애인 교육 개선법의 절차상 보호 규약의 어느 조항도 부모가 이미 제출된 적법 절차 이의와는 별도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 하지 않는다.

심의회 의 일정과 편리성

“30일 해결 기간 내 문제 조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문제 해결 기간 만료 30일 이후 45일 이내로, 또는 “신속 일정(Expedited Timelines)” 이라 명시된 조정 기간 후 45일 이내에:

- 심의회 최종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 판결 사본은 관련 당사자 양측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행정법 판사는 당사자중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하여 45일 이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매 심의회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열린다.

신속 일정

장애 학생을 대신해서 적법 절차 이의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제기되었을 때 공립 교육기관은 신속한 심의회 일정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 현재 학교에 등록 및 출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 학생의 학교배치가 임시 대안 학교에 처한 경우; 또는
- 장애 징후 판정

심의회는 이의서가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 행정법 판사는 심의회 후 1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 문제 해결회의는 이의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 제기된 문제가 양측에게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한 심의회는 이의서 접수 15일 이내 진행되어야 한다.

심의회 판결의 최종 효력

행정법 판사의 판결은 관련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효력을 지닌다. 판결에 대해 불만인 어느 한 쪽은 심의회에 제출된 이의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

판결 불복 (Appeal)

심의회 의 사실 인정문과 판결에 대해 동의 하지 않는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주 법원 혹은 연방 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행정법 판사의 판결 후 120일 이내에 할 권리가 있다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 적법 절차 심의회 기록을 접수 한다;
- 학부모나 공립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 진술을 듣는다;

-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린다;
-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조치를 부여한다

장애인 교육개선 법 B항(Part B of the IDEA)은 미 헌법, 1990년 장애인 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73년 재활관련 법 5편(Title V of the Rehabilitation Act Section 504), 또는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 법에 따라 이들의 권리, 절차, 개선책 등을 제한 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 단,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모 또는 교육기관은 먼저 행정 심의 국과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 해야만 한다. 학부모는 현 장애인 교육개선 법 규정과 중복되는 다른 법규에 따라 해결책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법규에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학부모는 장애인 교육개선 법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행정 대책을 법원으로 가기 전에 먼저 사용해야만 한다. (즉, 적법 절차 이의제기, 문제 해결회의, 그리고 공평한 적법 절차 심의회 과정)

변호사 비용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 또는 심리 절차에서 법정은 다음 해당자에게 적정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 승소 당사자인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메릴랜드 주 교육부나 공립 교육기관이 경솔하고 불합리하며 근거 없는 이의나 이에 따른 후속적인 소송 사유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변호사, 또는 소송이 분명 경솔하고 불합리하며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의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 또는
- 메릴랜드 주 교육부 기타 공립 교육기관이 학부모의 이의 제기 또는 이에 따른 소송 사유가 험박, 불필요한 지연 초래, 불필요한 소송 비용의 증대 등의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에서 승소한 경우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해당 소송이 발생한 지역사회에서 통상 이뤄지는 유사한 수준에 근거 평균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어떤 보너스나 승수도 사용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용을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다:

- 적법 절차 심의회 또는 법정 소송의 결과로 소집되지 않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팀(IEP)의 경우;
- 적법 절차 심의회를 요청하기 전에 수행된 조정 절차의 경우;

- 문제 해결회의의 경우; 그리고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서면 합의가 제의된 후에 이뤄지는 서비스의 경우:
 - 이러한 제의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 68조가 정한 기한 내에 이뤄졌거나 또는 행정 소송의 경우 소송 시작 10일 이전에 이뤄진 경우;
 - 합의 제의가 10일 이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심의회를 통해 학부모가 얻은 구제조치가 합의 제의보다 학부모에게 더 유리하다고 법정에서 판단하는 경우 학부모가 합의 제의를 거절할 만한 타당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인정될 수 있다.

다음 상황에서는 비용이 삭감될 수 있다:

- 학부모나 학부모의 변호사가 부당하게 분쟁 해결을 지연시킨 경우;
-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비슷한 능력, 지명도, 경험을 가진 해당 지역 변호사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의 시간당 평균 요율 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 소송의 성격에 비해 시간과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또는
- 변호사가 적법 절차 심의회 요청서 제출 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삭감되지 않는다:

- 공립 교육기관이 문제해결을 지연시킨 경우; 또는
- 절차적 보호 규약 요건이 위반 된 경우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는 장애인 교육개선 법(IDEA)에 규정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학부모는 이 사항을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부록

장애자 교육개선 법 분쟁 해결 과정 비교

	조정 절차	적법 절차 이의제기	문제 해결회의	주상대 이의제기
누가 진행을 주도하는가?	학부모 또는 교육기관, 그러나 양측 모두 자발적이어야 한다	학부모 또는 교육기관	양측이 조정 절차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교육기관은 적법 절차 이의 서를 접수 시 문제 해결회의 일정을 잡는다	개인 혹은 기관, 타 주의 개인과 기관 포함
이의 제기 시효	특별히 정해진바 없음	양측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ⁱ	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 제기로 자동 발생	위반 사실이 주장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300 항 규정에 따라 적법 절차 이의가 제기 되기 전에 발생한 문제들을 포함한 모든 사항 (예외 규정 있음) ⁱⁱ	장애판정 여부, 평가 또는 학교 배정, 무상 교육 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 (예외 규정 있음)	학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동일	장애인 교육개선 법 B항과 300 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항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일정	특별히 정해진바 없음	기간 연장이 별도로 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	양측이 조정 절차를 가지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교육기관은 학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 제기를 접수 15일 이내에 문제 해결회의를 열어야 한다. 양측이 달리 합의하거나 문제 해결회의에 불참했거나 학교측이 학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 제기 접수 15일 이내에 문제 해결회의를 열지 않는 한 문제 해결 기간은 적법 절차 이의서 수령 후 30일 ^{3.v,vi,vii}	기간 연장이 허락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이의서 수령 후 60일 ^{viii}
누가 문제를 해결하는가	중재자와 함께 학부모, 교육 기관.조정절차는 자발적이며 양측은 합의점에 도달 해야 한다	심의 관/행정법 판사	학부모와 교육기관 양측 모두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 ^{ix}

시간 제한은 부모가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공립 교육기관이 적법 절차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되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공립 교육기관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혹은 (2) 장애인 교육개선 법 B 항의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제공 되어야 하는 정보를 공립 교육기관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34 CFR §300.511(f))

ii 다음 사항은 예외다: 공립 교육기관은 부모가 특수교육을 처음 제공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반복 시키기 위해 적법 절차 이의나 조정 절차를 사용할 수 없다 (34 CFR §300.300(b)(3)); 공립 교육기관은 부모가 자녀의 초기 장애 판정 여부 혹은 부모가 장애 아동을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홈 스쿨을 시키는 것에 대해 재 평가를 하기위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을 반복 시키기 위해 (34 CFR §300.300(c)(4) (i)) 적법 절차 이의나 조정 절차를 사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에 장애 아동을 배정한 부모가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공립 교육기관이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로 제한된다 (34 CFR §300.140); 공립 교육기관이 수준 높은 교사를 제공하지 못했음은 적법 절차 이의 제기 대상이 아니라 주교육 기구 (State Education Agency)를 상대로 제기할 문제다. (34 CFR §300.156(e))

iii 적법 절차 이의가 징계 절차에 대한 신속일정 심의회를 청구한 경우거나 아동이 현재 학교에 미등록 상태거나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 문제 해결 기간은 15일 이다.(7일 이내에 열리는 회의에서) 만약 문제가 해당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심의회 요청이 이뤄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회가 열려야 하며 심의회 10일 이내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34 CFR §300.532(c) and COMAR 13A.05.01.15)

iv 심의 담당관인 행정법 판사는 해당 당사자 어느쪽의 요청 시 기간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34 CFR §300.156(e))

v 법 규정은 30일 해결기간에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적법 절차 심의회의 45일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개시 된다: (1) 양측이 문제 해결회의를 가지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2) 30일 문제 해결 기간 전에 조정 절차나 문제 해결 회의 중 어느 하나가 개시된 후, 양측이 합의가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3) 양측이 서면으로 30일 문제 해결 기간 경과 후 조정 절차를 계속 갖기로 서면 합의했으나 후에 양측 중 한 쪽이 조정 절차를 철회한 경우(34 CFR §300.510(c))

vi 학부모의 문제 해결회의의 불참이 문제 해결 과정과 적법 절차 심의회 일정을 지연시킨 경우 (34 CFR §300.510(b) (3))

vii 공립 교육기관이 문제 해결회의를 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문제 해결회의 개최를 열지 않고 또는 문제 해결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부모는 행정법 판사가 적법 절차 심의회 일정을 개시하도록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34 CFR §300.510(b) (5))

viii 주 상대 이의 제기에 대한 일정은 특정 이의나 부모와 (혹은 개인 이나 기구, 조정 절차나 분쟁 해결에 대한 대안이 주 절차에 따라 그 개인이나 기구에 필요한 경우) 관련된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립 교육기관이 조정 절차나 기타 분쟁 해결을 위한 주 안에서 가능한 여타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기한이 연장 될 수 있다.(34 CFR §300.152(b) (1))

ix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이의 제기 절차는 공립 교육기관에게 제기된 이의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포함, 이의 제기에 신중하게 대응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부모와 해당 교육기관에게 자발적으로 조정 절차를 밟을 기회를 제공한다.(34 CFR §300.152(a) (3)). 경우에 따라서 이의 제기자와 해당 교육기관은 문제 해결 시 메릴랜드 교육부의 도움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